

지도자 관리 규정

2013. 6. 7. 제정

2014. 7.17.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지도자 및 지도자 강사의 교육, 자격증 발급 등 지도자의 양성과 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 범위)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치어리딩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지도자 및 지도자 강사로 활동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제2장 지도자의 구분 및 교육

제3조 (지도자의 정의)

지도자라 함은 협회가 발급하는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팀의 지도자 또는 강사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지도자의 등급 및 지도대상)

지도자는 협회가 발급한 자격증 등급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팀을 지도할 수 있으며, 보유 등급보다 하위 등급 지도자의 대상팀도 지도할 수 있다.

1. 스포츠지도사 (치어리딩생활체육) 2급 - PRIME COACH II

연령에 상관없이 기초레벨 1~2급까지 지도가 가능하다.

* 기존 초등지도자는 검증교육을 받고 변경이 가능하다.

2. 스포츠지도사 (치어리딩생활체육) 1급 - PRIME COACH I

연령에 상관없이 기초레벨 3~4급까지 지도가 가능하다.

* 기존 3급 지도자는 별도 교육 없이 검증교육을 받고 변경가능하다

3. 스포츠지도사 (치어리딩 전문경기) 2급- ELITE COACH II

연령에 상관없이 기초레벨 5급, 6급까지 지도가 가능하다.

댄스와 스텐트로 구분되는 전문팀을 지도할 수 있다.

4. 스포츠지도사 (치어리딩 전문경기) 1급 - ELITE COACH I

연령에 상관없이 기초레벨 6급과 실업, 프로팀과 국가대표팀까지 지도가

가능하다. 댄스와 스텐트로 구분되는 전문팀을 지도할 수 있으며 레벨 6급까지 가능하다.

5. 안전 지도자(KCSCC:Korea Cheerleading Safety Coach Course)

: 팀을 지도하기 위한 필수 지도자 과정으로 프라임2급 과정부터 의무이수 하도록 한다.

6. MASTER COACH (국내의 최상급, 국제 코치)를 신설하며, 최소 만 5년 이상의 지도자 경력자 중 해외 코치 코스를 수료받은자 중 ICU의 승인으로 지정한다.

제5조 (스포츠지도사 -치어리딩생활체육 프라임코치 2급 교육 및 자격 부여)

프라임코치 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 및 평가를 거쳐야 한다.

1. 신청 요건 : 만 18세 이상으로서, 신청서 요건에 의한 서류심사를 통과한자
2. 교육 기간 : 21시간 기준
3. 자격평가내용 : 이론, 실기, 태도/출석
4. 자격증 부여 : 이론 및 실기 평가점수 80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태도/출석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제6조 (스포츠지도사 - 치어리딩생활체육, 프라임코치, 1급 교육 및 자격 부여)

프라임코치 1급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 및 평가를 거쳐야 한다.

1. 신청요건 : 만 18세 이상으로서, 신청서 요건에 의한 서류심사를 통과한자로서 프라임코치 2급 자격증 수료 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며, 최소 2회 이상의 월 작품세미나를 참석하여야한다.
2. 교육 기간 : 30시간 기준
3. 자격 평가 내용 : 이론, 실기, 태도/출석
4. 자격증 부여 : 이론 및 실기 평가 점수 80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태도/출석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제7조 (스포츠지도사 -치어리딩 전문경기 , ELITE COACH 2급, 교육 및 자격 부여)

만 20세 이상으로서 엘리트코치 2급 지도자(댄스, 스텐트 구분)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 및 평가를 거쳐야 한다.

1. 신청요건 :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 가. 프라임코치 1급 보유자로, 협회 등록팀에서 최소 3년 이상의 지도한 경력이 있는 자
 - 나.프라임코치 1급 보유자로, 고등학교 포함 최소 5년 이상 전국규모 대회의

선수 경력이 있는 자 , 지도경력이 2년 이상 보유자

다. 프라임코치 1급 지도자로, 17개 전국지부 회장의 추천을 받고 협회장 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자

2. 교육기간 : 60시간 기준

3. 자격 평가 내용 : 이론, 실기, 태도/출석

4. 자격증 부여

가. 이론 및 실기 평가 점수 80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태도/출석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나. 3개월 분량 팀 훈련일지를 제출한 자

제8조 (스포츠지도사 - 치어리딩 전문경기 , ELITE COACH 1급 교육 및 자격 부여)

1급 지도자(댄스, 스텐트 구분)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 및 평가를 거쳐야 한다.

1. 신청 요건 :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엘리트2급 지도자 자격증 취득 후 협회 등록팀 지도 경력 3년 이상자

나. 엘리트2급 지도자 자격증 취득 후 협회 등록팀 지도 경력 2년 이상, 국가대표 단 국제경기에 선수로 2회 이상 출장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엘리트2급 지도자로, 17개 전국지부 회장의 추천을 받고 협회장 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자

2. 교육기간 : 90시간 기준 내외 지정 워크샵 최소1회 이상

3. 자격평가 : 이론, 실기, 태도/출석

4. 자격증 부여

가. 이론 및 실기 평가 점수 80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태도/출석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나. 3개월 분량 팀 훈련일지를 제출한 자

제9조 (안전지도자 교육 및 자격 부여)

안전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 및 평가를 거쳐야 한다.

1. 신청요건 : 만 12세 이상으로서, 신청서 요건에 의한 서류심사를 통과한자

2. 교육기간 : 6시간 기준

3. 자격 평가 내용 : 이론, 태도/출석

4. 자격증 부여 : 이론 평가 점수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태도/출석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제10조 (마스터 국제코치 교육 및 자격 부여)

마스터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 및 평가를 거쳐야 한다.

1. 신청 요건 :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KCA에서 추천하여 ICU 승인 받은자
 - 가. 엘리트 1급 댄스 코치 자격증 취득 후 협회 등록팀 지도 경력 5년 이상 자로 스텐트 종목 엘리트 2급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서 지정된 해외연수과정을 수료한 자.
 - 나. 엘리트 1급 스텐트 코치 자격증 취득 후 협회 등록팀 지도 경력 5년 이상 자로 댄스 종목 엘리트 2급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서 지정된 해외연수과정을 수료한 자.
 - 다. 엘리트1급 지도자로, 국가대표팀 코치로 2회 이상 출전 지도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17개 전국지부 회장의 추천을 받고 협회장 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자
2. 교육기간 : 90시간 기준 내외, 해외 연수
3. 자격평가 : 이론, 실기, 태도/출석
4. 자격증 부여
 - 가. 이론 및 실기 평가 점수 80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태도/출석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나. ICU 세계치어리딩연맹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제 활동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제11조 (자격의 유효)

1. 유효기간 : 취득일로부터 2년의 유효기간을 두며 2년 동안의 활동이 없으면 자격이 자동 박탈된다.
2. 연회비 : 지도자는 100,000원을 연회비로 해당 지역 협회 지부에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지역에서 활동을 원하는 경우 해당 지부회장의 승인을 받아 50,000원의 추가 지역 연회비를 납부한다. 2년 미납 시 강사 자격이 박탈된다.

제12조 (평가 시험 불합격자의 재응시)

1. 지도자 자격 평가 시험 불합격자는 시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응시 할 수 있다.
2. 태도 및 출석으로 인한 불합격자는 최초 응시자와 동일하게 교육을 이수해야한다.

제13조 (외국 기관 발급 자격증)

ICU(International Cheer Union:세계치어리딩연맹), ACU(Asia Cheer Union:아시아대륙

치어리딩연맹) 또는 각국 치어리딩협회 주관의 지도자 교육과정에 참가하여 발급받은 공인 자격증은 협회의 심의를 거쳐, 보수교육 후에 해당 자격을 부여한다.

제14조 (수료 및 자격증 소지자 공지)

협회는 지도자 교육 자격증 보유 현황을 연중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지도자의 활동 금지)

협회로부터 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지 않은 자는 협회 등록팀 지도자로 활동할 수 없으며, 협회 자격증 소지자 중 지도자로서의 명예를 실추 시킨 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증을 박탈할 수 있다.

제16조(교육의 권한 및 위임)

지도자교육의 권한은 협회에 있으며, 시도협회에 위임할 수 있으나 강사는 협회가 지정한다. 위임받은 시도협회는 지도자교육의 계획과 결과를 협회에 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제3장 보수교육(지도자 재교육, 지도자 워크샵)

제17조 (정의)

보수교육(지도자 재교육, 지도자 워크샵)이라 함은 자격증을 소지한 지도자의 지도 능력을 유지, 보강하기 위해 협회가 실시하는 사후 교육을 말한다.

제18조 (목적)

1.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로서 상당기간 지도자로서 활동하지 않다가 다시 시작하는 지도자의 능력 재교육
2. 현직 지도자의 능력 개선과 보강
3.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지만 자격증 취득을 약속하거나, 보조강사로 임명된 자의 교육

제19조 (대상)

협회 발급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모든 사람과 자격증 취득을 약속했거나, 보조강사로 임명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20조 (교육 제도)

보수교육은 협회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최소 1년에 6회 이상 실시하며 지도자는 1년에 5회 이상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도팀이 대회 출전할 경우에는 1회 교육을 참

석한 것으로 준한다.

제21조 (교육의 권한 및 위임)

교육의 권한은 협회에 있으며, 시도협회에 위임할 수 있으나 강사는 협회가 지정하거나 지부의 강사배정을 사전 승인 한다. 위임받은 시도협회는 지도자교육, 보수교육 및 작품세미나 등의 계획은 최소 2주일 전에 신청하여 승인받고, 교육 수료 후 한달 이내에 중앙에 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제4장 지도자 교육강사

제22조 (지도자 교육강사의 정의)

지도자 교육 강사 (이하 강사라 한다)라 함은 협회로부터 강사 자격을 받아 지도자를 대상으로 교육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23조 (강사의 구분)

1. 역할에 따는 구분

- 가. 주 강사 : 지도자의 자격 부여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강사
- 나. 보조 강사 : 주 강사를 지원하는 강사
- 다. 초빙 강사 : 특정 목적의 교육, 과목을 위해 임명, 초빙된 강사

제24조 (강사의 처우)

지도자 교육 강사의 처우에 관한 사항은 협회가 별도로 규정한다.

부칙

1. 규정의 채택과 효력

- (1) 본 규정은 2013년 6월 13일 개최된 대한치어리딩협회 이사회에서 채택되었으며, 2014년 7월17일에 개정되었다.
- (2) 본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규정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

규정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이나 불가항력적인 사항의 경우는 협회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한다.